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039

발의연월일: 2022. 11. 1.

발 의 자:김선교·성일종·김예지

조수진・김상훈・조경태

강기윤 · 이헌승 · 김정재

박대수 · 김석기 · 권명호

정경희 · 양금희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최근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발생으로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,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된 것에 맞추어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였음.

이에 국가기관 등 직장 내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조치 등을 마련하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·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에는 2 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 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, 피해자 보호·지원 시설의 설치·운영, 법률구조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나. 여성가족부장관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특히 수사기관의 장은 스토킹 사건 담당자 등에게는 예방교육을 필 수적으로 받도록 함(안 제5조).
- 라. 스토킹 사건이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,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(안 제6조).
- 마.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등을 금지하고,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,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(안 제7조, 제12조, 제14조 및 제16조).
- 바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등의 보호·지원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피해자

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,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
사.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,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 현장 등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,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(안 제14조 및 제18조).

법률 제 호

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스토킹"이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.
- 2. "스토킹행위자"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.
- 3. "피해자"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스토킹의 상대방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·방 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1.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운영
 - 2. 스토킹의 예방・방지를 위한 조사・연구・교육 및 홍보
 - 3. 피해자를 보호 ·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· 운영
 - 4.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, 자립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
 - 5.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

력체계의 구축・운영

- 6. 스토킹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- 7. 피해자의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체계의 구축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4조(스토킹 실태조사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,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스토킹 예방교육 등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(이하 "국가기관등의 장"이라 한다)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수사기관의 장은 스토킹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「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 매매 예방교육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

- 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토킹 예방지침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교육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 다.
-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, 제3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지침 및 재발방지대책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한다.
- 제6조(스토킹 사건 발생 시 조치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 관에게 통보하고,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기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7조(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)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과 관련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8조(취학 지원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그 가족(이하 "피해자등"이라 한다)이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(입학·재입학·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지원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의 보호· 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(이하 "지원시 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의 설치·운 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지원시설의 업무)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
 - 2. 피해자등의 신체적 · 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
 - 3. 피해자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

- 4.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 지원
- 5.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「법률구조법」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
- 6. 스토킹의 예방 ·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
- 7. 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사 · 연구
- 8.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시설에 위탁된 업무
- 9.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 ·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
- 제11조(교육의 실시) ①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한다.
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간·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피해자의 의사 존중 의무)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3조(수사기관의 협조) ① 지원시설의 장은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 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(지구대·파출

- 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)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제14조(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) ①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스토킹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질문을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출입,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 -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· 신고자·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행위자로부 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.
- 제15조(비밀 유지의 의무)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16조(벌칙) ①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

밖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17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8조(과태료) ①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스토킹 사건 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,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· 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